



KIEP 기초자료  
23-11

2023년 9월 12일

#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최장호**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장

(choi.j@kiep.go.kr, Tel: 044-414-11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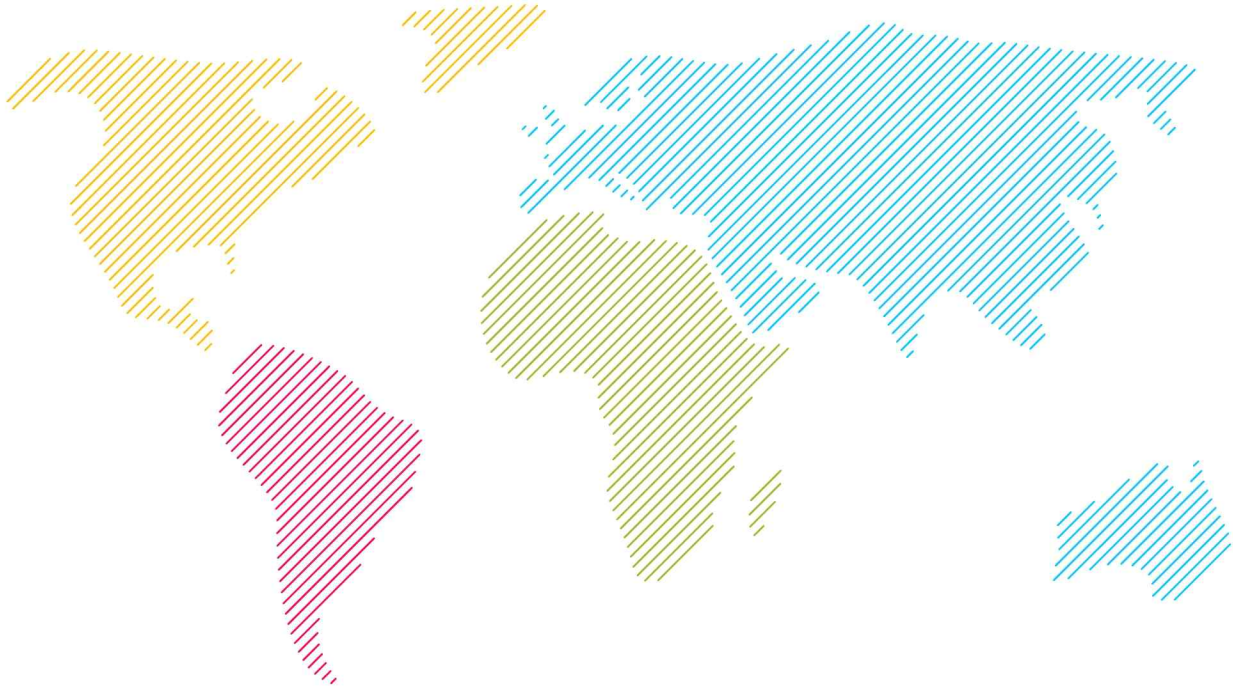
**이희선** 세계지역연구센터 통일국제협력팀 연구원

(leeheesun@kiep.go.kr, Tel: 044-414-1041)

## 북일 관계 개선 동향과 쟁점

### 요약

- ▶ 최근 일본이 조건 없는 북일 대화 재개를 제안하였고 북한도 이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임.
  -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문제 해결 의제를 제기하여 대내 정국을 주도하면서 기시다 총리의 낮은 지지율을 타개하고자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였음.
  - 북한은 일본과의 수교로 대북제재에 따른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고, 식민 지배에 대한 일본의 사과를 얻어 체제 정당성을 확보하는 한편, 대일 청구권 자금을 활용하여 경제 개발을 추진할 목적으로 북일 관계 개선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기시다 총리는 두 차례에 걸쳐 공식 연설에서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며, 북한도 두 차례 인공위성 발사에 앞서 이례적으로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하는 방식으로 화답하였음.
- ▶ 북일 대화에서 일본은 ‘납치자 문제와 미사일 위협 제거’,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전쟁 배상금 지급’을 최우선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나, 양측의 입장 차가 매우 큰 상황
  - 일본은 ‘납치자 문제, 일본 영토와 근해를 향해 발사되는 미사일 문제, 비핵화 협상 재개, 다른 나라에 지급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전쟁 배상금 지급,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은 ‘과거사 사과, 전쟁과 식민 지배를 포괄하는 식민지 배상금 지급, 재일본 조선인의 지위 보장, 북일 수교’ 등을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보임.
  - 그러나 핵심 의제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 일본은 추가 협의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고 북한은 관련 협의와 조치가 이미 완료됐다는 입장이어서 협상이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됨.
- ▶ 경제적으로는 식민지 배상금 청구 규모가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데, 북한은 200억 달러 수준을 요구하고 있고 일본은 50억 달러 수준을 배상할 것으로 주장하고 있음.
  - 북한은 과거사 사과와 함께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배상금 규모는 현재 가치로 최고 2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됨.
  - 일본은 식민 지배가 아닌 2차대전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50억 달러 수준이 지급되어야 하며, 여기에서 1970년대 북한이 상환하지 못한 대일 무역 채무는 제외되어야 한다는 입장임.
  - 그러나 추가로 일본이 북한에 1960~70년대 북송사업 손해 배상, 2006년 대북제재 피해 보상까지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 ▶ 북일 양측이 관계 개선을 위한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북일 대화가 성사되더라도 현행 UN 대북 제재하에서는 배상금 지급이 어렵고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한 상태여서 양측이 일괄 합의를 이루기 어려운 상황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함.



## 차 례

1. 연구 배경 및 목적
2. 북일 관계 개선의 유인과 역사
  - 가. 북일 국교 정상화 협의의 역사
  - 나. 북일 관계 개선 전략과 주요 의제
3. 북한과 일본의 상호 청구권 관련 쟁점과 현황
4. 일본의 대북 피해보상금 역청구 관련 쟁점과 현황
5. 전망과 시사점

참고문헌

## 1. 연구 배경 및 목적

■ 최근 북한과 일본이 양국 현안을 두고 대화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북일정상회담을 통한 관계 개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음.

- 관계 개선을 먼저 제안한 것은 일본으로,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일본인 납북자 귀국을 촉구하는 국민 대집회(23.5.28)와 재정금융위원회 연설(23.6.8)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북일정상회담 조기 개최를 위해 북한과 고위급 협의를 갖기를 원한다고 밝힘.<sup>1)</sup>
- 북한의 박상길 부상은 일본의 제안에 대해 “두 나라가 서로 만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긍정적으로 답(23.5.29)<sup>2)</sup>하였고, 더불어 일본의 우려가 큰 북한의 인공위성 발사(23.5.31, 23.8.22)도 국제해사기구(IMO)와 일본 해상보안청에 사전 통보<sup>3)</sup>하는 방식으로 북일 관계 개선을 협의할 수 있다는 우호적인 조치를 행함.
- 일본정부는 북한과의 실무접촉을 공식적으로 부인<sup>4)</sup>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 정황을 고려했을 때 관계 개선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향후 고위급 회담 등의 방식으로 북일 대화가 추진될 수 있음.<sup>5)</sup>

■ 북일 관계 개선은 우리의 전략적 이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어 지속적인 관찰과 관여를 통한 상황관리가 필요한데, 북한 비핵화, 일본 대북 배상<sup>6)</sup>을 통한 일본의 북한 개발 참여, 북일 수교 방식 등은 남북 관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만약 미국이 북일 교섭 과정에서의 비핵화 문제 논의를 전제로 북일 수교를 지지한다면 관련 논의가 우리의 의사와 무관하게 전개될 수 있음.
- 일본이 북한에 대한 차관제공과 일본기업의 참여를 늘리는 방식으로 배상금을 지급하려 할 경우, 일본이 북한 개발을 주도할 수 있음.
- 때문에 우리의 전략적 이해를 위해 북일 관계 개선을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개입할 필요가 있음.

■ 본고의 목적은 북일 관계 개선의 쟁점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북일 협상의 전개 방향을 전망하는 것임.

- 이를 위해 북일 양측의 관계 개선 유인을 파악하고, 과거 북일 관계 개선 시도 사례를 통해 양측이 제기하였던 다양한 의제를 분석하였음.
- 특히 과거 일본의 한국 및 동아시아 국가와의 국교 정상화 과정과 비교하여 분석하고 북한의 대일본 청구권과 일본의 대북한 역청구권의 근거와 규모를 추정하였음.

1) 「日 기시다 “북한과 조기 정상회담 추진 중”」(2023. 6. 9).

2) 「北 “일본 변하면 못만날 이유 없어”…기시다 “구체적 진전 원해”」(2023. 5. 29).

3) 「日 “北,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2023. 5. 29).

4) 「일본 정부, ‘북한과 실무접촉’ 보도 부인…“그런 사실 없어”」(2023. 7. 2).

5) 「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2023. 7. 3).

6) 통상적으로 배상(reparation)은 위법·불법 행위로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였을 때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며, 보상(compensation)은 적법한 행위로 발생한 손해나 손실에 대한 대가, 혹은 위로금이나 지원금 등을 지불하는 것을 의미함.

## 2. 북일 관계 개선의 유인과 역사

### 가. 북일 국교 정상화 협의의 역사

- 2002년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일본 총리가 방북하여 김정일 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갖고 ‘조일(북일) 평양선언’을 발표하면서 ‘쌍방이 국교 정상화를 빠른 시일 내에 실현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을 표명하였으나 북한의 핵실험으로 결렬되었음.
- 1989년 냉전 종식으로 북한과 일본이 관계 정상화를 추진할 수 있는 국제정치적 환경이 조성되자 양측은 1991년 1월부터 1992년 11월까지 8차례의 수교 회담을 진행하였으나, 전쟁 배상 문제, 핵사찰 문제, 관할권 문제, 남북대화 및 UN 동시 가입 등 대부분의 의제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결렬되었음.
- 2002년 평양선언에서 ‘일본의 식민지배 사과,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한의 대일본 청구권과 일본의 역청구권, 무상 자금 및 장기 차관,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 재일 조선인의 지위, 수탈 문화재 반환, 상호 군사 위협 중단, 핵·미사일 문제를 포함한 안전 보장 문제, 양국 수교 및 국교 정상화 협의’ 등의 문제를 논의하기로 합의하였음.<sup>8)9)</sup>
  - 북한이 일본인 납치자 문제를 시인하였고, 이후 5명의 납치자를 일본에 돌려보내면서 북일 대화가 급진전되었음.
  - 일본은 ‘일괄 해결 후 경제협력 방식’의 국교 정상화를 제시하였는데,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발생한 양국 및 그 국민 모두의 재산과 청구권을 상호 포기하고 이에 따라 소위 위안부, 강제연행 등의 문제를 포함하여 식민지 지배에서 기인한 금전지불을 포함한 모든 청구는 법적으로 완전하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으로 함과 동시에 일본이 북한에 대하여 경제협력을 실행’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함.<sup>10)</sup>
  - 그러나 북한은 문화재 반환과 보상, 개인의 인적·물적 보상은 북일 국교 정상화와는 무관한 것이라며, 식민지 시대의 강제연행, 학살, 위안부 문제 등 반인륜적 범죄는 청구권 포기의 대상이 아니므로 경제협력과는 별도로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음.
- 평양선언에 합의한 대로 2002년 12차 회담과 2004년 제2차 정상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일본이 요구한 핵 개발 포기 및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한 입장 차이로 결렬되었고,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한 일본 국내 여론이 악화되면서 북일 관계가 경색되었음.<sup>11)</sup>
- 2006년 베이징에서 제13차 회담이 개최되었으나 양측은 입장 차만 확인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함.

7) 김계동(2012), pp. 349~351.

8) 류길재, 「조일평양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767>(검색일: 2023. 8. 14).

9) “일본측은 과거 식민지배로 인하여 조선인민에게 대대한 손해와 고통을 준 역사적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 들이며 통절한 반성과 마음속으로부터의 사죄의 뜻을 표명하였다. 쌍방은 일본측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측에 대하여 국교정상화후 쌍방이 적절하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걸쳐 무상자금협력, 저리 자장기차관제공 및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주의적 지원 등의 경제협력을 실시하며 또한 민간경제활동을 지원하는 견지에서 일본국제협력은행 등에 의한 융자, 신용대부 등이 실시되는 것이 이 선언의 정신에 부합된다는 기본 인식 밑에 국교정상화회담에서 경제협력의 구체적인 규모와 내용을 성실히 협의하기로 하였다.”(조일평양선언 2조, 2002. 9. 17).

10) 김계동, 앞의 책, pp. 359~360.

11) 통일부(2008), 『2008 북한개요』, p. 155.

- 이후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2006.7.5.)와 핵실험(2006.10.9.)으로 일본이 대북 제재를 결의하면서 북일 관계 개선 논의가 중단되었음.

■ 2014년 북일은 중단된 국교정상화 논의를 위해 장관급 회담을 개최하고 스톡홀름 합의를 발표하였으나, 납북자 문제를 두고 양측 간의 입장 차가 극명하게 드러났으며 결국 2016년 북한의 핵실험으로 관련 논의가 중단되었음.

- 이 합의에서 북한은 1945년 전후 북한 내에서 사망한 일본인 유골 및 묘지, 잔류 일본인과 배우자, 납치 피해자 및 행방불명자를 포함한 모든 일본인에 대한 포괄적·전면적인 조사 실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 및 조사와 확인 사항의 대일 수시 통보 및 협의, 일본 측 관계자의 북한 체류와 관계자 면담 및 관련 장소 방문 허용 등에 합의하였고, 일본은 대북 제재 조치를 해제하고 인도적 지원을 추진하기로 합의하였음.<sup>12)</sup>
- 납북자 문제에 대해 북한과 일본의 입장 차가 명확하게 드러났는데, 일본은 1970~80년대에 일본인 17명이 납북됐고 그중 일시적 귀환 형태로 돌아온 5명(2002년 9월)을 제외한 12명이 북한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12명 중 8명은 사망했고 나머지 4명은 아예 북한에 오지 않았다고 해결할 납북자 문제가 없다는 견해를 고수하였음.
- 관련 논의는 북한의 핵실험(2016.1.6.) 및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논의 시작으로 중단됨.

## 나. 북일 관계 개선 전략과 주요 의제

■ 일본의 북일 관계 개선 시도는 대내적 요인에서 기인하는 것이 큰데,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하락하면서 국면 전환을 위해 여론 주목도가 높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한 미사일 위협 해결을 화두로 던지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으며 북한도 전략적 이해관계가 일치하면서 이에 응하고 있음.

- 마이넘버카드 시행의 잦음, 저출산과 물가 대책 부재 등으로 최근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이 56%에서 35%로 하락하면서 국면전환을 위해 지지층인 보수층에게 여론 주목도가 높은 일본인 납치자 문제, 북한 미사일 위협 해결을 주장하였음.<sup>13)</sup>
  - 기시다 총리가 직접 공식 석상에서 두 차례(23.5.28, 23.6.8)에 걸쳐 북일정상회담 개최를 제안하였음.
- 북한도 한미일 공조 강화에 따른 압박을 완화하고 UN 대북제재로 인한 고립을 타개하기 위하여 북일 대화에 응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북일 대화에서 ‘일본인 납치자 문제, 미사일 위협 해소, 비핵화 논의 재개, 북일 수교 및 배상금 지급’의 의제를 제안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한미일 공조를 통해 북한 미사일 억제력(deterrence)을 확대하는 동시에 북일 대화도 병행하면서 한반도에 대한 전략적 이해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2) 이형근, 최유정(2018), pp. 13~14.

13) 「‘잘 나가던’ 기시다 지지율, 두 달 만에 56%→35%...집권 후 최저치」(2023. 9. 4).

-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북일 대화에서 최우선 과제가 될 것인데, 일본은 2002년 평양선언 이후 추가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나, 북한은 관련 조치는 이미 일단락됐다는 입장으로 이견이 큼.
- 일본은 북한 측에 일본 영토와 근해로 향하는 미사일 발사를 중단해 줄 것으로 요청할 것으로 보이는데, 금번 북한의 위성 발사 시 일본 해상보안청에 대한 사전 통보는 해당 요청을 고려한 북한의 조치인 것으로 판단됨.
  - 2023년 방위백서에서 일본은 북한을 “일본의 안전에 대해 종전보다 한층 중대하고 절박한 위협”이라고 정의<sup>14)</sup>하고 있으므로, 북일 수교로 북한의 일본에 대한 안보 위협을 해소하는 것은 중요한 외교적 목표임.
- 비핵화 논의 재개도 조건으로 제시하면서 일본이 한반도 문제에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마련<sup>15)</sup>할 것으로 판단되나, 북한은 핵 문제는 미국과 북한 사이의 의제이므로 이에 일본이 개입할 명분이 없다고 거부할 개연성이 큼.
- 북일 수교 및 전쟁 배상금 지급으로 북한 개발의 주도권을 확보함과 동시에 동북아에 대한 영향력을 공고히 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됨.

■ 북한은 주요 의제로 일본의 과거사 사과와 식민지배 배상금, 재일 조선인 지위 보장을 주요 의제로 제기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통해 체제 우월성을 과시하고 외교적 고립을 탈피하여 정상 국가의 이미지를 구축하려 하는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의 일제강점기 식민 지배에 대한 공개적 사과는 북한의 민족 자긍심 회복 및 항일무장투쟁에 기반한 북한 체제의 정당성과 우월성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됨.
- 북일 수교는 북한의 외교적 고립을 해소하고, 상호 대사관 건립을 통해 북한의 대일본 폭격이나 전쟁 가능성을 경감시켜 체제 안정을 보장하며, 일본의 대북 투자와 북일 무역을 재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임.
  - 북일 무역은 1961년 북일 간 직접교역이 시작된 이후 1980년 1,259억 2,400만 엔으로 정점을 기록한 후, 일본의 대북 수입 금지(2006년)와 수출 금지(2009년)로 2009년 2억 6,200만 엔을 마지막으로 전면 중단되었는데, 북한은 일본과의 무역에서 1987년~2006년(2001년 제외) 동안 모두 흑자를 기록하였음.<sup>16)</sup>
  - 북한은 1960년대 재일동포 귀국사업으로 외화와 생활물자, 기술 및 생산설비를 확보하였는데, 북일 관계 개선 시 재일동포를 중심으로 북한에 대한 투자 사업을 재개할 것으로 기대됨.
- 또한 대일 청구권 지금은 대북 제재 장기화와 코로나19 국경봉쇄로 침체된 북한 산업생산을 정상화하여 경제 성장을 시도하기 위한 초기 자본으로 활용될 것으로 전망됨.<sup>17)</sup>

14) 「일본 2023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2023. 7. 28).

15) 2023년 5월 29일 박상길 북한 외무성 부상은 담화를 통해 납치자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의 자위권에 해당하는 것으로 북일이 관계 개선을 위한 의제로 상정할 수 없다고 주장함.

16) 남근우(2017), p. 161.

17) 「〈한일강제병합100년〉 ②북한은 어떻게 보나」(2010. 08. 17).

■ 경제적으로 쟁점이 되는 배상금은 북한의 대일 식민지배 배상금과 일본의 대북 1970년 무역 채무에 대한 역배상금 등이 있는데, 일본은 배상금 규모를 줄이기 위해 북한에게 추가로 1960~70년 북송사업 손해 배상, 2006년 대북제재 등의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 북한의 대일본 청구권과 일본의 1970년 무역 채무 지급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으나, 대일본 청구권 배상 사유와 규모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함.
- 일본은 북한에도 과거 한국과 동아시아 국가들에 지급했던 배상금을 한도 내에서 지불하려고 하고 있으므로, 북한의 배상 요구가 지나칠 경우 잠재적으로 1960~70년 북송사업 손해배상, 2006년 대북 제재로 인한 피해 보상 등을 추가로 요구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줄이려고 할 것으로 전망됨.
- 본고에서는 북한이 일본에 가진 청구권과 일본이 북한에 가진 역청구권의 규모를 구체적으로 추정하여 양측이 합의에 이를 수 있을 것인지 판단하고자 함.

### 3. 북한과 일본의 상호 청구권 관련 쟁점과 현황

■ 북한이 주장하는 대일 청구권은 전쟁 배상금이 아닌 식민지 배상금으로, 한국의 대일 청구권(전쟁 배상금 형식)과는 상이하며, 식민지 배상금 규모가 전쟁 배상금보다 큰 것으로 추정됨.

- 전쟁 배상금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1952.4.28.)을 근거로 일본이 점령지역에 지불하는 것인데, 식민지 지배-피지배관계를 전제하지 않은 것으로, 2차 대전 시 태평양 전쟁을 위한 일본의 불법적인 병합도 교전관계로 규정하여 보상하도록 한 것임.<sup>18)</sup>
  - 그러나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냉전체제하에서 대공산주의 방위와 자유주의 진영 강화를 위해 일본의 재건이 시급하다는 미국의 전략적 이해관계 판단에 의해, 과도한 배상금 징수를 지양하고 존립가능한 경제를 유지할 수 있는 선에서 청구권을 행사하도록 제한함.<sup>19)</sup>
- 이에 일본은 2차대전 패전국으로 한국에 전쟁 배상금 형식으로 무상 공여 3억 달러 외에 유상 정부 차관 2억 달러, 민간차관 1억 달러 등 총 6억 달러를 지급하였음.<sup>20)21)</sup>
- 1965년 한일 협정 사례를 참고하여, 북한은 1991년 1월 1차 북일회담에서 “과거의 조·일 관계는 전쟁피해에 관한 보상형식을 기본으로 총괄”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입장을 바꾸어 같은 해 11월에 열린 5차 회담에서는 “과거 일본이 조선을 무력으로 침략하여 조선의 주권과 영토를 강탈하여 식민 지배를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민

18) 장박진(2010), p. 144.

19) “ARTICLE 14 (a) (중략) Nevertheless it is also recognized that the resources of Japan are not presently sufficient, if it is to maintain a viable economy, to make complete reparation for all such damage and suffering and at the same time meet its other obligations.” Treaty of Peace with Japan, 1952, pp. 61-62.

20) 이이범(2015), pp. 233~237.

21) 한국과 대만의 대일 청구권 협상은 1951년 샌프란시스코평화회의에서 체결된 대일평화조약 제21조에게 기인하고 있는데, 대일 평화조약에는 식민 통지에 대한 배상 청구권은 규정하고 있지 않음.

에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와 불행과 고통을 준 것에 대한 보상”이라고 입장을 바꾸었는데, 이는 한국보다 큰 배상금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됨.<sup>22)</sup>

- 한일수교를 위한 협상에서 한국 측이 제안한 배상액은 ① 현물반환요구 ② 확정채권 ③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피해 ④ 일본정부의 저가격 수탈에 의한 피해 등 4부로 구분하여 배상 규모를 측정하였으나, 일본이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위해 불가피하게 ‘③ 중일전쟁 및 태평양전쟁에 기인한 인적물적피해’ 항목을 축소하고, ‘④ 일본정부의 저가격 수탈에 의한 피해’는 삭제하였음.<sup>23)</sup>
- 북한은 일본에 ③과 ④에 대한 배상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됨.
- 참고로, 대만과 중국은 각각 자신들의 전략적 이해관계 때문에 대일 청구권을 포기하고 그에 상응하는 외교적인 조치를 요구하였음.
  - 대만은 1952년에 제2차 세계대전 연합국으로서 지위를 인정받아 국제사회로부터 주권 국가로 인식되기 위하여 서둘러 중일화약(中日和約)을 체결하면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함.
  - 반면 중국은 1972년 일본과의 수교 협상에서 대만과 단교하고 중국과 수교하는 대가로 대일 청구권을 포기함.

■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한이 그간 일본에 제시한 식민지 배상금 규모는 50억 달러에서 200억 달러가 될 것으로 추정됨.<sup>24)</sup>

- 한일협정 사례를 참고하면 무상 공여 약 24억 달러, 정부 차관 16억 달러, 민간 차관 8억 달러 등 총 약 50억 달러 수준이 될 것임.
  -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른 보상금(무상 공여) 연 3천만 달러(10년간 총 3억 달러)는 1965년 당시 환율(1달러에 266.4원)로 108억 엔이었으며 연평균 물가상승률(미국 3.87%)을 고려한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약 2억 4,180만 달러<sup>25)</sup>이며, 이를 다시 10년으로 환산하면 총 24억 1,800만 달러임.
  - 무상 공여를 기준으로 정부 차관과 민간 차관을 동일한 비율로 환산하면 총 약 50억 달러가 됨.
- 언론에 따라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북한이 일본에 300억~400억 달러까지 요구했다는 보도와 2002년 북일 평양선언에서 일본이 북한에 100억 달러 보상을 제안했다는 보도가 있는데 이를 물가 상승률(3.87%)을 적용하여 2022년 가치로 환산하면 약 200억 달러가 됨.<sup>26)</sup>
- 사실 확인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나 일본이 북한에 제안한 100억 달러로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대일 청구권 규모는 최근 북한 GDP의 1/3~1/2에 해당되며 북한의 경제 상황 개선에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됨.

22) 月刊 朝鮮資料(1991), pp. 19~25, 재인용: 장박진, 앞의 자료, p. 155.

23) 김주희(2021), p. 51.

24) 「북-일 ‘청구권 80억달러’ 거의 합의」(1992. 2. 10); 「식민지배 배상금 北 “80억~100억달러” 日 “30억~50억달러”」(2002. 8. 30); 「北, 식민지 배상금 130억달러 日에 제시」(2006. 4. 2); 「北·日, 2002년에 114억 달러 보상 밀약」(2012. 9. 18).

25) 「한일 청구권 협정 보상금 따라잡기」(2019. 8. 29).

26) 삼성증권(2018), p. 39.

## 4. 일본의 대북 피해보상금 역청구 관련 쟁점과 현황

■ 일본은 대일 청구 자금의 현물 지급과 이를 연계한 대북 경제협력 강화로 북한 개발을 주도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판단됨.

- 동남아 국가들의 대일 청구권 배상은 현금이 아닌 일본기업이 대상국에 인프라를 건설하는 역무(役務) 형태로 제공되었는데, 이는 일본의 자본재 수출을 촉진하고 이후 유지보수에 일본기업이 지속적으로 관여하여 일본기업과 자본이 동남아에 진출하는 기반이 되었음.<sup>27)</sup>
- 일본이 한국에 제공한 무상 공여 3억 달러 또한 현물, 즉 ‘일본의 생산물과 일본인의 용역’의 형태로 협정발효 일로부터 10년간(1966~75년) 제공되었는데, 이로 인하여 한국의 높은 경제적 대일 의존도는 1990년대까지 계속됨.
- 배상금 지급에 따른 일본경제에 대한 충격과 외환 보유고를 고려하였을 때, 일본은 투자 이윤 창출이 어려운 일방적인 무상 공여 제공은 최소화하고자 할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일본은 추가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역청구권을 주장하면서 대일 청구권 규모를 축소하려 할 것이며, 협상 타결 이후 추가 보상 제기에 따른 혼란을 막기 위해 일괄타결식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북한이 지나치게 큰 배상금을 요구할 경우, 1970년대 대북 무역 채무 외에 잠재적으로 검토 중인 역청구권을 제기하면서 배상금 규모를 줄이려고 시도할 것으로 판단됨.
  - 현재 논의되지 않고 있으나 일본이 제기할 수 있는 대북 역청구권은 ① 1970년대 대일 무역 채무 ② 2006년 대북제재 피해보상금 ③ 납북 피해자 보상금 ④ 1960~70년대 북송사업 손해배상 등인 것으로 예상됨.
- 또한 한국의 개인청구권 소송 사례<sup>28)29)</sup>를 참고하여 북일 청구권 협상에서는 국가 대 국가의 청구권은 물론 개인의 위자료 청구를 모두 포함하는 일괄타결식 협상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됨.
  - 한국 외에도 필리핀 양민 학살과 위안부 문제, 인도네시아 보충병 강제동원 등 개인 배상 문제가 남아있으나, 일본 정부는 각국 정부와 전후처리협정에서 일괄타결 방식으로 협상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개인 보상 및 배상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임.<sup>30)</sup>

■ [대일채무] 구체적으로 각 사안의 청구 규모를 추정해 보면, 2018년에 일본이 추정한 1970년대 대북 무역 채권액은 연체 이자를 포함하여 8억 유로를 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는 현재 환율(1유로에 1.1달러)로 약 8억 7천만 달러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짐.<sup>31)</sup>

27) 허원영(2021), pp. 303~304.

28) “청구권협정의 협상과정에서 일본 정부는 식민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은 채, 강제동원 피해의 법적 배상을 원칙적으로 부인하였고, 이에 따라 한일 양국의 정부는 일제의 한반도 지배의 성격에 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강제동원 위자료청구권이 청구권협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판결.

29) 김기창, 최나진(2017), p. 825.

30) 이기태(2014), pp. 288~289.

- 1970년대 북한과 일본 사이의 교역량이 급증하면서 1974년 무역 총액은 3억 6,000만 달러에 달하였으나, 제 1차 석유파동(1973년)으로 북한의 주요 수입품목인 석유와 기계류 가격이 폭등한 반면, 주요 수출품인 비철금속 가격이 하락하여 수입대금 지불이 연기되면서 대외 채무가 발생하였음.
- 1979년 북한과 일본 사이에 미지급 채무원금 약 800억 엔(금리 LIBOR+1.25%)의 지불을 1989년까지 10년간 연장하는 기본합의서가 채택됨.
- 북한은 1983년 원금의 일부인 9,000만 서독마르크(당시 약 100억 엔)와 이자 등 약 300억 엔을 상환한 것을 마지막으로 채무를 불이행하고 있으며, 2000년 기준 19억 5천만 마르크(약 936억 엔, 이자 포함)의 채무가 남아있는 것으로 추정됨.<sup>32)</sup>
- 1986년 일본 무역회사들은 회수하지 못한 수출대금을 당국에 청구하였으며, 당시 일본 통산성(현 경제산업성)은 무역 보험으로 약 300억 엔을 지불하였고, 이후 정기적으로 일본 보험회사들이 북한에 채무 이행을 통보
- 참고로 한일 청구권 협정에서도 당시 한국의 대일채무 4,573만 달러를 대일 청구권 배상금에서 제외함.

■ [대북제재 피해보상금] 2006년 일본의 대북 제재로 일본기업이 급하게 북한에서 철수하면서 투자 자산을 회수하지 못하였는데, 이후 일본 통산성 주도로 보험업체가 피해 기업에 보상한 뒤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보상 규모는 알려지지 않고 있음.<sup>33)34)</sup>

- 북한은 일본기업의 철수 이후 재입국하여 투자설비, 원부자재, 완제품을 회수하려는 재일상공인에게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북한 내 투자자산을 사실상 몰수하였음.
- 피해 기업 구제를 위해 중소기업청이 대북제재의 영향을 받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별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경영환경변화대응자금(経営環境変化対応資金) 명목으로 2.3%대의 저금리 대출을 지원하겠다고 발표<sup>35)36)</sup>
- 당시 북한이 몰수한 일본기업 재산과 피해액 규모는 정확히 알 수 없으나 당시 통산성이 지불한 보험금에 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가능성 있음.

31) 李榮雨(2002), pp. 33~34; 이찬우(2009), p. 50; 이찬우(2017), 「북한경제와 협동하지 않는 북한의 대외경제 :일본」(2017. 12. 4).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72>(검색일: 2023. 07. 10); 최유정, 한하린(2021), p. 43.

32) 최유정, 한하린, 앞의 자료, p. 43; 김연진(2006), p. 2.

33) 2006년 10월 13일 일본 경제산업성은 북한으로부터의 수입 및 수입대금 지불을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經濟産業省は、今般「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北朝鮮に係る対応措置について、(平成18年10月13日閣議決定)に基づき、北朝鮮からの全貨物の輸入を禁止するとともに、北朝鮮から第三国への仲介貿易取引及び北朝鮮からの輸入に係る代金の支払を禁止する措置を講ずることとしました。”; 經濟産業省(2006),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北朝鮮からの輸入禁止措置等について」(10월 13일).

34) 남근우, 앞의 자료, p. 173.

35) 經濟産業省(2006), 「北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に係る中小企業者対策について」(10월 13일), [https://www.chusho.meti.go.jp/keiei/antei/2006/061013kita\\_seisai.htm](https://www.chusho.meti.go.jp/keiei/antei/2006/061013kita_seisai.htm)(검색일: 2023. 7. 10).

36) 2006년 12월 1일에 진행된 제165회 일본 중의원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록 6호에서 참고인의 발언에 의하면 중소기업청 발표 이후 수산물 수입업자, 중고차·오토바이·가전 수출업자 등 북한과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던 중소기업들의 상담이 2달간 83건 접수됨. “その窓口での相談実績でございますけれども、十一月三十日までに、水産品の輸入業者、それから中古車、バイク、家電等の輸出業者等々から八十三件の相談が寄せられているところでございます。” 衆議院(2006), 第165回国会 經濟産業委員会 第6号 (平成18年12月1日(金曜日)). [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a.nsf/html/kaigirokua/009816520061201006.htm](https://www.shugiin.go.jp/internet/itdb_kaigirokua.nsf/html/kaigirokua/009816520061201006.htm)(검색일: 2023. 08. 17).

■ [납북 피해자 보상금] 일본정부는 2003년부터 현재까지 법률을 통해 납북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지원하고 있는데, 보상 규모는 정확하지 않으나 대략 125만 달러(귀국한 납치자 지급분) 수준인 것으로 추정되며, 아직까지 보상하지 않은 사망한 납치자까지 포함하면 이보다 더욱 커질 것으로 판단됨.<sup>37)</sup>

- 2018년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중점시책 내용에 의하면, 납북 귀국자 1인당 17만 엔, 2인당 24만 엔을 기본으로 이후 1명 늘어날 때마다 3만 엔을 가산하여 소득에 따라 조정한 뒤 가정별로 10년간 매월 지급하기로 되어있으며, 2021년 한 해 관련 예산 1,300만 엔 중 870만 엔이 피해자들이 있는 세 가정에 지급되었음.<sup>38)</sup>
- 일본은 2002년 귀국한 5명 외에 귀국하지 못한 납북자가 총 12명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북한은 8명은 이미 사망했고 4명은 북한에 입국한 적이 아예 없다는 입장을 강경히 유지하고 있어, 합의가 요원함.

■ [복송사업 손해배상] 2022년 재일조선인 복송사업 참가자 5명이 북한정부를 대상으로 일본 법원에 인당 1억 엔 규모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지방법원에서 청구를 기각하였으나 상위법원에 항소 중으로, 손해보상금은 약 350만 달러 규모인 것으로 추정됨.<sup>39)</sup>

- 복송사업은 북한과 일본이 체결한 '재일교포 복송에 관한 협정'에 따라 1959년부터 1984년 사이에 조선총련계 재일교포들이 북한으로 돌아가 정착하도록 한 사업을 말함.
- 1960~70년대 복송사업으로 북한에 들어갔다가 2000년대 탈북한 원고들은 "지상낙원이라는 말에 속아 북한에 갔다가 가혹한 생활을 했으며 가족들이 지금도 북한에서 출국을 방해받고 있다"고 주장하였음.
- 재판부는 북한이 조총련과 함께 북한 상황에 대해 사실과 다른 선전으로 권유한 사실은 인정하였으나 배상을 청구할 시효가 지났으며 일본의 재판소가 관할권을 갖지 않는다고 판결함.
- 향후 일본의 상위법원에서 북한 정부가 피해자들에 대해 손해보상금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할 경우, 총 5억 엔 상당의 배상금을 지불할 책임이 생길 수 있음.

## 5. 전망과 시사점

■ 북일 수교 의제의 우선순위가 서로 상이하고 양측 간 입장 차도 극명하여 합의가 요원한 상황임.

- 일본이 최우선시하는 납북자 문제에서 북한이 크게 양보하지 않을 경우, 북일 대화는 성과를 이루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 일본은 납북자 문제, 미사일 문제, 비핵화의 순서로 해결을 강조하고 있으나, 북한은 과거사 사과, 배상금 지급, 재일조선인들에 대한 처우 개선을 협상의 우선 과제로 내세우고 있음.

37) 북한당국에 납치된 피해자 등의 지원에 관한 법률(헤이세이 14년 법률 제 143호), 北朝鮮当局によって拉致された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平成十四年法律第百四十三号).

38) 平成30年度内閣府重点施策について, 일본 내각부 홈페이지, (2018. 8), <https://www.cao.go.jp/yosan/juten/juten30.html>(검색일: 2023. 07. 10)

39) 「『복송사업』탈북자 北 상대 손해소 패소...『지상낙원은 거짓』 인정」(2022. 3. 23).

- 일본은 남북 일본인 문제 해결을 최우선 의제로 북한의 추가 조치를 요구할 가능성이 크나 북한은 남북자 문제는 이미 해소되었다는 입장임.
- 북한은 일본에 과거사 사과와 청구권 배상을 최우선으로 요구할 것이나 일본은 과거사 사과에 부정적임.
- 북한이 요구하는 대일 청구권 자금의 규모는 100억 달러 이상인 반면, 일본이 주장하는 배상금 규모는 50~100억 달러 수준인 것으로 추정
- 배상금의 규모 자체가 달라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일본은 대북 배상금의 현금 지급을 최소화하고 대신에 현물과 역무(役務) 형태로 보상을 주장할 것으로 판단되어, 북한의 수용 여부에 따라 배상 방식이 합의에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을 것임.

■ 북일 관계 개선은 일본의 대내적 요인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데, 대외적 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아 양측이 합의에 이를 가능성은 낮으나, 북일 관계의 다양한 변화 가능성에 대비하여 지속적으로 동향을 관찰할 필요성이 있음.

- 기시다 내각은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기 위하여 국민적인 관심사인 일본인 납치자와 북한 미사일 위협 해결을 주장하면서 북일 관계 개선을 시도하고 있는데, 북일 관계 개선 논의는 그 자체로 국제사회에 일본이 한반도 문제의 이해관계자라는 이미지를 부각시켜 대외적인 지위를 공고히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그러나 북일 대화가 실현되기에는 대외환경이 우호적이지 않은데, UN 대북 제재로 북한에 대한 경제협력과 청구권 배상금 지급이 불가능하며, 협상에 성공하더라도 현재의 대북 제재하에서는 국제기구를 통한 인도적 지원만이 가능한 상황임.
- 청구권 배상금 지급이 합의되더라도 대북제재 유예·해제 이후 지급이나 에스스로 방식의 지급이 논의될 것으로 전망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일본이 상호 필요에 의하여 대대적인 합의를 이끌어 낼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려우므로 지속적인 동향 관찰이 필요함.

■ 북일 대화 재개 시 한미일 공조를 통해 우리의 전략적인 이해가 고려될 수 있도록 외교적인 역량을 발휘하여야 함.

- 북일 관계 개선 교섭 과정에서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재확인되어야 하며, 북일 수교 및 정상회담 추진은 북한의 비핵화와 연계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할 필요가 있음.
- 북한은 비핵화 문제는 미국과 북한이 협의해야 할 사안이며, 일본과는 무관한 사안이라고 대응할 개연성이 있으나, 북한 핵이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실질적인 위협이 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협의할 필요성이 있음.
- 또한 북일 수교는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평화 정착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북일 관계 개선은 남북관계 개선과 연계되어 진행되어야 함.
- 북일 수교는 국가 대 국가의 조치가 아니라, 남북한이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발생한 특수관계로 인하여 북한과 일본 사이에 이루어지는 외교적인 조치<sup>40)</sup>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며, 일본은 남북통일을 지지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유도해야 함.<sup>41)</sup>

40)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2021. 4. 20), <https://www.law.go.kr/%EB%B2%95%EB%A0%B9/%EB%82%A8%EB%B6%81%EA%B4%80%EA%B3%84%EB%B0%9C%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검색일: 2023. 8. 13).

■ 일본의 대북 청구권 지급 일본이 북한 개발과 경제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한일 관계는 물론 남북 관계 개선, 남북일 협력 가능성도 모색해 보아야 함.

- 일본의 대북 청구권 지급은 무상 공여, 차관제공, 국제기구를 통한 간접 지원, 현물 및 역무(役務) 방식의 보상으로 일본기업의 북한 인프라 건설 진출 등으로 이루어져 일본과 북한의 경제협력을 급속도로 진전시킬 가능성이 큼.
- 북일 관계 개선이 우리의 국익을 저해하지 않도록 한일 관계에 긴밀한 협의를 진행하는 한편, 북일 관계 개선과 시기를 같이 하여 남북 관계 개선과 남북일 협력을 추진할 가능성도 모색해 볼 필요성이 있음. KIEP

41) 한일기본조약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정 제195호(III)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자료: ‘한일기본조약’,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40&sitePage=>>(검색일: 2023. 8. 17).

## 참고문헌

### [국문자료]

- 김제동. 2021. 『북한의 외교정책과 대외관계』. 명인문화사.
- 김기창, 최나진. 2017. 「한일 청구권 협정과 강제 동원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 『비교사법』, 제24권 2호, pp. 813~858.
- 김연진. 2006. 「북일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00~05 북일 교역액을 중심으로」. KOTRA 기획조사 제06-005호.
- 김주희. 2021. 「1952년 한국과 대만의 대일(對日) 협상 비교 연구: 청구권 및 제반 현안을 중심으로」, 『한국정치외교사논총』, 제42집 2호, pp. 43~77.
- 남근우. 2017. 「조총련계 재일상공인과 남한 기업인의 대북투자」. 『통일정책연구』, 제26권 2호, pp. 151~178.
- 삼성증권. 2018. 「한반도 'CVIP'의 시대로」. 북한투자전략 보고서. 삼성증권.
- 이기태. 2014. 「한일회담과 일본의 동남아시아 전후처리 비교연구: 일본의 배상 외교를 중심으로」. 『일본연구논총』, 40호, pp. 269~295.
- 이이범. 2015. 「대일 청구권자금의 세부 항목 협상에 관한 연구」. 『일본연구』, 제23집, pp. 231~252.
- 이찬우. 2009. 「북한과 일본의 경제관계 현황과 전망」. 『수은북한경제』 10, pp. 37~66.
- 이형근, 최유정. 2018. 「최근 한반도 정세 변화와 북일 경제협력 과제」. KIEP 기초자료 제18-21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양기웅, 김준동. 2006. 「북일수교협상(1990~2006)의 결렬과 재개의 조건」. 『일본연구논총』 제23호, pp. 113~162.
- 장박진. 2010. 「식민지관계 청산을 둘러싼 북일회담(평양선언까지)의 교섭과정 분석: 한일회담의 경험에 입각하면서」. 『국제·지역연구』 19권 2호, pp. 135~174.
- 최유정, 한하린. 2021. 「북한 대외 채무의 쟁점과 과제: 국제 규범과 해외 사례를 중심으로」. KIEP 연구자료 제21-04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통일부. 2008. 『2008 북한개요』.
- 허원영. 2021. 「전후 일본의 대 동남아시아 경제협력과 문화외교 - '경제지배' 이미지의 대응 수단으로서의 소프트 파워」. 『일본학』, 43호, pp. 297~321.

### [일문자료]

- 李燦雨. 2002. 「日本と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国の経済関係の歴史と現状」. 『ERINA REPORT』, Vol. 47, pp. 27~44.
- 北朝鮮当局によって拉致された被害者等の支援に関する法律 (平成十四年法律第百四十三号).
- 經濟産業省. 2006. 「外国為替及び外国貿易法に基づく北朝鮮からの輸入禁止措置等について」. (10월 13일)
- \_\_\_\_\_. 2006. 「北朝鮮に対する制裁措置に係る中小企業者対策について」. (10월 13일)
- 内閣府. 2018. 「平成30年度内閣府重点施策について」.
- 衆議院. 2013. 「165回国会 経済産業委員会 第6号 会議録」. (12월 1일)

### [인터넷 자료]

- 법체처 국가법령정보센터. 2021.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3조」. (4월 20일). <https://www.law.go.kr/%EB%B2%95%E>

B%A0%B9/%EB%82%A8%EB%B6%81%EA%B4%80%EA%B3%84%EB%B0%9C%EC%A0%84%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검색일: 2023. 8. 13).

류길재. 「조일평양선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Article/E0066767>(검색일: 2023. 8. 14).

외교부. 「조일평양선언(02.9.17)」. [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0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https://www.mofa.go.kr/www/brd/m_3973/view.do?seq=362046&srchFr=&srchTo=&srchWord=&srchTp=&multi_itm_seq=0&itm_seq_1=0&itm_seq_2=0&company_cd=&company_nm=&page=5)(검색일: 2023. 7. 6).

이찬우. 2017. 「북한경제와 협동하자⑬」 북한의 대외경제 :일본.(12월 4일). <https://www.lifein.news/news/articleView.html?idxno=3072>(검색일: 2023. 7. 10).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일청구권자금」. <https://www.archives.go.kr/next/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6162&sitePage=>(검색일: 2023. 7. 5).

\_\_\_\_\_. 「한일기본조약」. <https://www.archives.go.kr/next/newsearch/listSubjectDescription.do?id=005140&sitePage=>(검색일: 2023. 8. 17).

## [언론자료]

「日 기사다 "북한과 조기 정상회담 추진 중"」. 2023. 『서울평양뉴스』. (6월 9일). <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582>(검색일 : 2023. 8. 13).

「北 "일본 변하면 못만날 이유 없어"...기사다 "구체적 진전 원해"」. 2023. 『연합뉴스』. (5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9021851504>(검색일 : 2023. 8. 13).

「日 "北, 31일~내달 11일 인공위성 발사 통보"...정찰위성 발사 임박했나」. 2023. 『연합뉴스』. (5월 29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529005652073>(검색일 : 2023. 8. 13).

「일본 정부, '북한과 실무접촉' 보도 부인..."그런 사실 없어"」. 2023. 『연합뉴스』. (7월 2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703138200073>(검색일 : 2023. 8. 13).

「北-日, 지난달 中-싱가포르서 2차례 이상 접촉」. 2023. 『동아일보』. (7월 3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230703/120043535/1>(검색일 : 2023. 8. 15).

「일본 2023 방위백서 주요 기술 내용」. 2023. 『연합뉴스』. (7월 28일). <https://www.yna.co.kr/view/AKR20230727160900073>(검색일 : 2023. 8. 13).

「〈한일강제병합100년〉 ⑫북한은 어떻게 보나」. 2010. 『연합뉴스』. (8월 17일). <https://www.yna.co.kr/view/AKR20100806140000014>(검색일: 2023. 7. 5).

「식민지배 배상금 北 "80억~100억달러" 日 "30억~50억달러"」. 2002. 『동아일보』. (8월 30일). <https://www.donga.com/news/Politics/article/all/20020830/7857986/1>(검색일: 2023. 7. 5).

「북-일 '청구권 80억달러' 거의 합의」. 1992. 『매일경제』. (2월 10일). <https://www.mk.co.kr/news/all/1118421>(검색일: 2023. 8. 24).

「北, 식민지 배상금 130억달러 日에 제시」. 2006. 『한국경제』. (4월 2일). <https://www.hankyung.com/politics/article/2002091384028>(검색일: 2023. 7. 5).

「“北-日, 2002년에 114억 달러 보상 밀약”」. 2012. 『KBS뉴스』. (9월 18일).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2537396>(검색일: 2023. 7. 5).

「한일 청구권 협정 보상금 따라잡기」. 2019. 『뉴제주일보』. (8월 29일). <http://www.jejuilbo.net/news/articleView.html?idxno=129219>(검색일: 2023. 7. 6).

「‘북송사업’탈북자 北 상대 손배소 패소... ‘지상낙원은 거짓’ 인정」. 2022. 『연합뉴스』. (3월 23일). [https://www.ytn.co.kr/\\_ln/0104\\_202203232322144871](https://www.ytn.co.kr/_ln/0104_202203232322144871)(검색일: 2023. 7. 10).